

□ 관련 근거

- 관세법 제264조의3 제1항 제6호
-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 제1항 및 별표3 제40호

□ 대 상

-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선불카드

① 해외 신용카드 사용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(관세령 §263의2①, 별표3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현금인출 내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제출기관) 여신전문금융업협회 ○ (제출대상)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용카드 물품구매* 내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해외사이트 온라인구매도 포함 - 신용카드 현금인출 내역 ○ (제출기준) 분기별 총액(물품+인출) 5천달러 이상 ○ (제출기한) 매분기 다음달 말일 	<p>□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 및 제출대상 확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제출기준) 물품, 현금인출 건당 600달러 초과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불 기준 적용 ○ (제출기한) 실시간

<개정이유> 해외소비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로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